학생 생활 규정

GYEONGGI GLOBAL SCHOOL

차 례

제 1장 총 칙 4
제 2장 교내 생활 4
제 1절 근 태 4
제 2절 용의 예절 6

제 3절 코로나 감염 및 확산 방지 특별조항 11
제 3장 선도위원회 11
제 4장 포 상 12
제 5장 징 계 14
제 6장 학생자치 활동 16
제 7장 학비환불 규정 19
제 8장 규정의 개정 20
부 칙 20
부 록 21

제 **1**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경기글로벌스쿨(이하 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교내.외 생활과 표창, 징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하여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건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교에 학적을 가진 학생에게 적용한다. 학교에 속한 교사 및 학생은 명시된 모든 규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규정을 어길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 **2**장 교내 생활

제 **1**절 근 태

제4조 **(**결석**)** 학생이 등교할 날 등교하지 않거나 등교하였어도 한 시간의 수업도 받지 않았을 경우 이를 결석이라 한다.

1. 공휴일과 학교장이 인정하는 휴일 이외의 날에는 학교에 출석하여야 한다.
2. 학생이 결석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양식에 의거 그 사유를 밝힌 체험학습허가원을 보호자로 부터 날인하여 사전 7일 전에 제출하여 부장교사, 교장 승인 이후 인정되며, 체험 학습 소감문을 제출하여야 출석으로 인정된다.
3. 질병으로 인하여 1일 이상 결석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 관련 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질병으로 인하여 11일 이상 연달아 결석할 때에는 장기결석으로 칭한다. 장기결석할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진료 관련 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가족의 혼인, 회갑, 상고 및 기고로 등교하지 못할 때는 체험 학습 허가원을 보호자로부터 날인하여 7일전에 제출하여 부장교사, 교장 승인 이후 아래 별표 2에 정한 기간의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결석으로 간주하지 아니하고 개근, 정근상을 줄 수 있다.
6. 총 수업일 중 출석일수가 70% 미만일 경우, 상급학년으로 진급할 수 없다. (신/편입생 예외)
7. 최종성적은 학생의 과목별 성적(중간시험, 기말시험, 레포트 등의 수업 중 성적 산출 항목별 점수의 합산)에 학기 전체 출석율을 곱해 산출한다. (예시, 수학 85점, 출석율 90%의 경우 : 85*0.9=76.5점)
8.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자가격리, 치료 및 기타 국가 지정 전염병 등으로 인한 격리 치료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한다.(증빙서류 첨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2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1
회 갑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1
사 망	◦부모 및 부모의 부모	7
	◦부모의 조부모 . 외조부모 . 증조부모 . 외증조부모	5
	◦부모의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형제 . 자매 및 그의 배우자 ◦조부모 . 외조부모의 형제 . 자매와 그의 배우자	3
탈 상	◦부모 및 부모의 부모	2
	◦부모의 조부모 . 외조부모 . 증조부모 . 외증조부모 ◦부모의 형제 . 자매와 그의 배우자	1

(단,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제5조 (지각) 등교시간 및 학과 시간까지 등교 및 입실하지 아니할 때 이를 지각이라 하며 담임 또는 교과 담당교사에게 그 사유를 밝혀야 한다. 단, 13시 이후의 사유 없는 늦은 등교는 결석으로 간주한다.

제6조 (조퇴) 일과 시간 전에 하교함을 조퇴라 하고 조퇴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부장교사 혹은 학생부장이 학부모의 유선 동의를 얻어야 하며, 조퇴계에 담임교사 및 부장교사의 확인을 받는다.

제7조 (결과) 학과 시간에 불참함을 결과라 하며 결과하고자 할 때에는 담임 혹은 교무부장과 교과 담당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8조 (처리) 지각, 결과(외출), 조퇴를 합하여 3회가 되면 결석 1일로 처리한다.
(단, 부장교사 및 담당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 (무단결석, 지각, 조퇴, 결과) 무단결석 및 무단 조퇴, 결과, 지각은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1일 무단결석일 때에는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사유를 밝힌다.
2. 3일간 무단결석하면 징계 기준(별표2, 별표3, 별표4)에 의거 징계한다.
3. 연락을 하였는데도 수업 일수 10일(2주) 이상 계속 결석할 때에는 제적 처리한다. (단, 학부모가 제적 처리를 연기 희망할 시는 정상을 참작한다.).
4. 무단 조퇴, 결과, 지각을 상습적으로 3회 이상 할 때에는 2항에 준한다.
5. 특별한 이유가 없이 3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제10조 (안전지도) 학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교시간인 08:50부터 하교시간인 16:50 사이의 병원진료, 조퇴의 목적 이외의 외부 출타를 절대 금지한다.
6.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히 감독 및 지도한다.

제11조(교외생활 지도) 학교는 학부모와 연계하여 귀가시간에서부터 귀교시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교외 생활에서 학생 비행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한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방지를 위해 철저히 감독, 지도한다.

제12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일체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보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학생이 학교시설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CCTV를 확인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 학생의 과실이 인정될 시 변상조치를 한다.)

제 **2**절 용의 예절 **(**어떠한 용의 예절의 규정이라도 어기는 학생은 귀가조치 될 수 있음**)**

제13조**(**복장 및 위생**)** 복장은 교복으로 한다. 교내에서 교복이외의 다른 복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교복은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하며 교복 이외의 옷과 혼용이 불가하다.(체육복과 교복 혼용불가)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할 수 없으며, 체육활동이 있는 요일에는 예외적으로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를 허용한다. 클럽활동 시간에도 예외적으로 체육복 착용을 허용한다. 단, 겨울철의 경우 교복 착용 후 외투는 자유롭게 허용한다.

제14조**(**두발**)** 두발은 자율화를 원칙으로 하되, 학생 신분에 맞게 단정히 한다.
(원색 색깔의 염색, 탈색, 화려한 장식은 규제한다) (붙임머리, 가발, 스크래치 등은 금지한다)

제15조**(**신발**)** 신발은 학생 신분에 맞게 착용하고, 등교시에는 슬리퍼 착용을 금지한다.
(실내에선 실내화 사용을 권한다)

제16조**(**소지품 및 장신구**)** 타인에게 상해를 끼칠 수 있는 장신구(팔찌,반지,귀걸이,목걸이,머리띠,시계 등)의 소지 및 패용을 금지한다. 다만 개인의 특성을 존중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끼치지 않는 나만의 개성을 보여주는 장신구는 허용한다. 그러나 분실 및 파손 시 책임은 개인이 진다(CCTV 확인 불가)
(귀걸이는 기본귀걸이 <귓볼에 1개>는 허용하되, 줄 달린 귀걸이, 피어싱, 귓볼 이외의 위치 금지)
(교사의 생활지도에 불응할 경우 하교 조치한다.)

제17조**(**화장**)** 피부 보호를 위한 기초화장 정도 이외에 화려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것, 색깔이 있는 것은 금지한다. (눈병을 유발할 수 있는 eye shadow나 펄감이 들어간 색조화장품 금지)
수업 도중에 화장품을 사용하면 적발 시 교사가 압수 조치 후 폐기 처분한다.
컬러렌즈의 착용을 금지한다.

제18조**(**학생증**)** 학생증은 항상 패용하여야 하며, 신분 제시용으로 활용하도록 한다.

제19조**(**청소**)** 청소를 통하여 근로와 협동 정신을 배양하고 아울러 위생 관념을 확립한다.

제20조**(**이성교제**)** 교내에서의 이성교제를 금지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내에서의 이성교제 라고 판단되는 행동은 절대 금지한다)
****이성교제 1차 적발 시 – 구두경고 조치 및 학부모 알림 (유예기간 2주)
****이성교제 2차 적발 시 – 이후 절차에 따른 징계 및 학부모 대면 상담 진행

제21조**(**환경**)** 교실에는 시설물, 비품 및 게시물을 규정된 위치에 설치 관리하고 항상 정리정돈으로 쾌적하고 정서적인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교내환경에 영향을 주는 교내에서의 흡연/음주 관련 사안은 이유를 막론하고 퇴학조치 한다.
(라이터, 술, 담배 소지 적발 시 / 교외에서 흡연 및 음주 후 교내에서 적발 시 즉시 정학 조치)

제22조**(**사이버윤리 준수**)** 건전한 사이버윤리 준수 및 생활을 위하여 노력한다.

1. 사이버 공간에서는 표준어와 바른말, 고운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사이버 공간이란, 각종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 메신저 (카카오톡 등) 등이 포함된다.
2.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언어. 성폭력), 타인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해서는 아니 된다.
4.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5. 사이버윤리 준수에 대한 항목을 어길 시 처벌 및 징계 조치한다.

제23조**(**통신기기 관리**)** 학교 내 통신기기를 사용할 때는 다음 각 호의 1을 준수해야 한다.

1. 학교 컴퓨터 및 관련기기 사용은 교수, 학습활동 및 관련 활동에 한한다.
2. 학교 정보 통신 기기는 사용방법을 익혀 사용하고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학생들의 개인통신기기는 각 학급에서 정한 클래스 룰에 의해 관리하며 수업시간 중에는 절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각 과목 담당교사의 필요 인정시는 사용할 수 있다.
4. 학생들의 휴대용 컴퓨터, 태블릿 등은 수업, 자료 조사 등의 학습관련 활동과 교사의 하락이 있는 경우만 사용할 수 있으며 게임, 동영상 시청 등의 학습 이외의 활동에 무단 사용할 경우 교사는 이의

사용을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1차 적발: 1일 압수, 2차 적발 : 7일 압수, 3차 적발: 부모님 면담)

*제14조 ~ 23조의 조항을 어기는 학생에게는 1차로 담임선생님이 지도하며, 불응 및 개선의지가 없을 시 2차로 부장교사가 지도한다. 부장교사 지도에도 불응 및 개선 의지가 없으면 곧바로 귀가조치 하며 교사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단계적인 징계절차를 밟을 수 있다. 부장교사는 이 사실을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알리며 면담을 실시한다.

제 **3**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및 확산 방지 특별조항

제24조**(**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 방지**)**

1. 교내의 모든 교직원 및 학생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 위생 관리를 하며 마스크 착용은 개인의 건강상태 및 선택에 따라 자율적으로 착용한다.
2. 교내의 모든 교직원 및 학생은 출입 전 체온체크 및 손소독을 실시한다. (체온측정 시 37.5도가 넘으면 출입불가)
3. 교내의 모든 교직원 및 학생은 점심식사를 위한 식당 출입 전 체온체크 및 손소독을 실시한다.
4. 건강상 이상이 있을 경우 학교와 소통하여 개인의 상태를 알리도록 한다.

제 **3**장 선도위원회

제25조**(**선도원칙**)**

1. 학생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2. 학생징계는 당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있도록 운영한다.
3. 학생에게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를 준다.

제26조**(**구성**)** 선도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은 교무부장, 교목, 학생부장, 담임이 아닌 교사 2인 혹은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로서 학교장이 임명한 교사로 구성한다.

1. 교무부장은 위원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학생부장으로 하고 위원회 사무를 주관한다.

제2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교내봉사활동」이상의 징계를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이를 심의하며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기타 학생지도에 필요한 사항

제28조**(**심의**)** 위원 ⅔ 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의 ⅔ 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

제29조**(**진술**)**

1. 위원회는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장교사,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학생의 진술을 진술서에 받아 징계에 참고한다.

제30조**(**재심**)** 학교장은 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 **4**장 포 상

제31조**(**포상시기**)** 포상의 시기는 정기포상과 수시 포상으로 한다.

1. 정기포상은 학년말 진급.졸업(수료)시 사정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수여한다.
2. 수시 포상은 교육상 필요하거나, 학교발전에 공헌하여 타의 귀감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학급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추천에 의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수여한다.
3. 포상의 종류는 해당 학기의 상황에 따라 학교장의 재량으로 추가 및 변동될 수 있다.

제32조(포상종류)

1. 포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공로상 ② GGS Pride ③ Heart of Christ ④ Best Citizenship Award ⑤ Academic Excellence Award ⑥ 봉사상 ⑦ Special Activity Award ⑧ Club Activity 우수상 ⑨기타상

제33조(공로상)

학생의 본분을 다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1.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
2. 학교의 명예를 대외적으로 선양하여 그 공이 뚜렷한 자(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상 이상, 국제대회에서 입상)

제34조**(GGS Pride)** (교내 장학금규정에 따라 장학금 적용)

학업 및 다양한 교내활동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35조**(Heart of Christ)**

신앙심이 돈독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36조**(Best Citizenship Award)**

교우관계가 우수하고 각종 규범을 잘 지키는 자

제37조**(Academic Excellence Award)** (교내 장학금규정에 따라 장학금 적용)

학업에 매진하여 탁월한 성적(GPA 3.9이상)을 거둔 학생을 표창하고 그중 다음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한다.

1. 수석 (1,2학기 성적 합산 GPA 4.0이상 학생 중 최고득점자 1위)
2. 차석 (1,2학기 성적 합산 GPA 4.0 이상 학생 중 최고득점자 2위)

제38조(봉사상)

근면.성실하고 봉사 정신이 강하며 책임감이 있어 학교.사회.학우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행동한 자

제39조**(Special Activity Award)**

다양한 교내활동에서 적극적인 사고와 열정적인 자세로 활동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40조**(Club Activity** 우수상)

각 Club 담당 교사의 추천을 받은 자

제41조(기타상)

1. 기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상을 제정 수여할 수 있다.
2. (별표2)에 의한 기준에 의거 상점이 많은 학생을 우선하여 모범학생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3. 포상대상자는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서에 제출한다.
4. 대외상 추천 기준은 1, 2학기 중간.기말고사 원점수 합계가 높은 자를 우선하며, 사정회에서 순서를 정한다. 제38조(포상제외)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2. 학교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학생으로서 성적사정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

제 **5**장 징 계

제42조(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2. 학생징계는 사안 발생 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고려한다.

제43조(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Detention
2. 교내봉사
3. 사회봉사
4. 퇴학처분

제44조(방법) 징계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징계 기간, 봉사활동 일수(시간) 등은 학생부와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Detention의 경우 해당 교과목 교사의 재량으로 실시한다.

1. Detention

① 해당 교과목의 숙제를 안 해오거나, 수업 도중 불손한 언행을 하고 소란을 피워 수업 진행을 방해하는 등 해당 교과목 교사의 지시에 불응할 시 교사의 재량으로 Detention을 실시한다.

② Detention 대상의 학생에게 Detention 용지를 배부하여 해당 교과목 교사, Detention 담당 교사, 학생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③ Detention 실시 시간은 16:00~17:00시 이며,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Detention을 받을 시 스쿨버스는 운행하지 않는다.

④ Detention 3번 누적 시 교내봉사, 5번 누적 시 사회봉사를 실시한다.

⑤ 5번 이상 누적 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학 혹은 퇴학 조치한다.

2. 교내봉사 **(**교내봉사활동 최소 **5**시간**)**

① 학생부장의 지도하에 지정된 장소에서 교내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봉사활동 시간은 선도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② 해당 학생은 반성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안에 따라 등교 정지를 할 수 있으며, 등교 정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학부모에게 징계 사실을 통보하고 선도에 대한 협조를 구한다.

3. 사회봉사 **:** 봉사시간 **10**시간 이상

① 부모동행으로 소정의 사회봉사활동을 실시하고 당해 기관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해당 학생은 반성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징계가 끝난 후에는 학부모, 학생의 연서로 된 학생생활규정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회봉사 처벌을 받은 학생은 각종 교내외 활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장학금 및 교내상 수상을 금지한다.

⑤ 사안에 따라 등교 정지를 할 수 있으며, 등교 정지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퇴학처분

① 성행이 극히 불량하고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자, 다른 학생에게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자 등은 퇴학처분 대상자로 한다.

② 퇴학 처분을 할 때에는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 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알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절차)

1. 징계 사안에 대하여는 담임교사의 의견과 담당교사의 진상조사를 토대로 학생 생활지도 부서의 교사회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2. 별표4, 5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의 징계는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단,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선도위원회 심의.결정 사항을 직원협의에 회부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결정)

1. 학교장의 결재일로부터 징계 기간이 시작된다.
2.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내용을 통보하고 협조토록 한다.
3. 사회봉사 처분을 받은 학생이라도 정기고사에 응하게 하여야 한다(단, 고사 기간은 처벌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7조(선도교사 지정) 학교장은 징계 처분하였거나 징계 해제된 학생에게 담임교사 외 1인의 교사를 지정하여 개별 지도토록 한다.

제48조(징계경감) 학교장은 징계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가망이 뚜렷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선도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단, 해제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결과처리) 학생 징계대장에 기록 보관한다.

제 6장 학생자치 활동 (학생회)

제50조(운영목적) 민주시민의 자질과 적응능력을 기르기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두어 운영한다.

제51조(학교지원) 학생자치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학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예산과 학생 활동을 지원한다.

제52조(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회 회장 1명, 부회장 1명
2. 각 학급의 반장 1명
3. 재학 중 '사회봉사'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생회 임원이 될 수 없다.
4. 학생회 임원은 교사들의 심의를 거친 성실한 자여야 한다.

제53조(직무)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3. 각반 반장은 해당 학습의 직무를 계획하고 관장한다.

제54조(임원의 선출)

1. 회장 및 부회장은 직접 선거로 선출하거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2. 각반 반장은 직접 선거로 선출하거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3. 회장 및 부회장, 각반 반장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임명할 수 있다.
4. 1인 출마시, 학교장 및 교사들의 심의를 거쳐 임명할 수 있다.

제55조(임원의 임기) : 전교회장, 전교 부회장 임원은 두 학기로 한다. 각반 리더 임원의 임기는 한 학로 한다. 단, 임기 중 '사회봉사'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된다.

제56조(학급회의의 구성)

1. 학급 반장은 당해 연도 각 학기 초에 학생들의 직접 선거로 선출 또는 교사추천으로 임명하며, 임기는 한 학기로 한다.
2. 재학 중 '사회봉사'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급회 임원이 될 수 없다.
3. 제 61조의 각 호와 같은 부서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57조(대의원회) 학생회의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1.학생회장, 부회장, 학급의 반장으로 구성한다.
2 의장은 학생회장이 하며 유고시는 부회장이 한다.
3 회의 :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8조(학생회장, 학년장의 선출)

1. (선거 시기) 선거 시기는 당해 학년도 학기 초로 한다.
2. (선거방법) 선거는 비밀투표에 의한 직접선거 혹은 교사추천에 의한 임명으로 한다.
3. (투표권자) 투표권자는 선거일 현재 재학 및 재직 중인자로 한다.
4. (선거일의 공고) 선거일 10일 이전에 선거일을 공고한다.
5. (후보등록기간) 후보등록기간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3일 이내로 한다.
6. (후보의 자격)
   1) 활동 년도를 기준으로 학생회 임원(회장, 부회장)은 직전 1년 이상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이여야 하며, 그 밖의 학생회 임원은 활동 학기 기준으로 직전 1학기 이상 학교에 재학한 학생이어야 한다.
   2)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이며 지도력이 있는 학생이어야하고 직전 년도 GPA가 2.7 이상인 학생.
   3) 회장은 선거권자 20인 이상의 추천, 부회장은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학생 (런닝메이트 제도를 운영할 시는 20인 이상의 추천)
   4) 재학 중'사회봉사, 퇴학'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
7. (후보등록서류) 후보 등록서류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후보 등록원서 1부
2) 선거권자의 추천서 1부(단, 추천자는 회장 후보 1인 및 부회장 후보 1인에게 추천할 수 있다.)

8. (후보공고) 선관위는 최소 선거일 3일전까지는 후보를 공고해야 한다.
9.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기간은 후보 공고일로부터 투표 당일 학과 시작 전까지로 한다.
10. (금지행위) 선거와 관련된 아래 행위를 금하며, 이를 위반 시 후보 등록이나 당선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선거와 관련하여 선물, 음식물, 금품 등의 제공 또는 제공약속 행위
2) 타 후보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유포행위
3) 위협, 폭행, 불안감 조성 등으로 공정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4) 기타 공정선거를 방해하는 행위

11. (합동 소견 발표회) 후보 합동 소견 발표회는 아래와 같이 시행할 수 있다.
1) (일시) 선거 운동기간중 또는 투표전 별도의 시간을 정해 합동 소견 발표회를 개최한다.
2) (대상) 전교생
3) (시간) 후보별 10분 이내
12. (선거관리) 공명한 선거의 관리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1) 선관위의 구성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전년도 학생회장, 부회장이 선거관리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을 수행하고 필요 인원을 선거관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2) (투표용지) 선관위 소정양식
3) (투 표) 지지후보 아래 칸에 준비된 도구를 이용하여 표기
4) (개 표) 선관위 주관
5) (무효표 처리)
가. 표시가 두 칸에 걸쳐 있는 경우
나. 두 명 이상에게 기표한 경우
다. 기표소 안에 준비된 도구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13. (투.개표 참관인) 후보별 2명 이내의 투.개표 참관인을 위촉한다.
14. (당선인 결정 및 공고)
1) 회장 후보의 최다 득표자를 회장 당선인으로 결정, 공고한다.
2) 부회장 후보의 최다 득표자를 부회장 당선인으로 결정, 공고한다.
3) 단일 후보인 경우에는 찬반 투표를 통해 과반의 찬성표를 얻으면 당선인으로 결정, 공고한다.
4) 회장이나 부회장 유고시 재투표를 하지 않고, 해당 후보 최다득표의 다음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 공고한다.
15. (기타) 본 선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관위에서 결정할 수 있으며,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선출의 방식 및 정원이 변경될 수 있다.

제 7장 학비 환불 규정

제59조(퇴학으로 인한 경우) 징계 위원회에서 퇴학으로 결정한 경우 학비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으며 재등록 할 수 없다.

제60조(자퇴로 인한 경우) 개인 사정으로 인해 자퇴를 신청할 경우 환불규정에 의거하여 환불된다. 학비에 포함되는 내역은 수업료, 식비, 스쿨버스비 이며 입학금과 발전기금 및 장학금은 제외 된다.

1) 환불규정은 학교 내, 외부사정 및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다.

제61조(휴학으로 인한 경우) 개인 사정으로 인해 휴학을 할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학기 수업료를 지불하여야 휴학 처리된다. 복학일 기준으로 수업료에 변동이 있을 경우 인상된 금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제62조(장기결석으로 인한 경우)개인 건강상황으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반드시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며 연달아 11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장기결석으로 인정 된다. 장기결석 시 수업료를 제외한 식비, 스쿨버스비에 한하여 환불된다.

제 8장 규정의 개정 및 적용

제63조(규정의 개정) 이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하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제64조(기타 규정)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특정 사안의 처리는 학생생활지도부서의 교사회의나 또는 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 30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규정은 2010. 3. 5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8. 5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규정은 2015. 8. 1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규정은 2016. 8. 29부터 시행한다.
6. (시행일) 이 규정은 2018. 8. 1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규정은 2019. 5. 1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규정은 2020. 8. 5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규정은 2021. 2. 4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규정은 2022. 7. 20부터 시행한다.
1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 8. 1부터 시행한다.

제정 및 재개정 과정	시행일
최초 제정	2009. 01. 30
개정 . 보완	2010. 03. 05
개정 . 보완	2013. 08. 05
개정 . 보완	2015. 08. 01
개정 . 보완	2016. 08. 29
개정 . 보완	2018. 08. 01
개정 . 보완	2020. 08. 05
개정 . 보완	2021. 02. 04

개정 . 보완	2022. 07. 20
개정 . 보완	2023. 08. 01

부 록

(별표1) 학업 우수상의 심의 기준

구 분	기 준	동점자 처리
종합 학업 우수상	◦ 해당학년 각 교과 석차 백분율이 모두 상위 10%이내인 학생 ◦ 당해 학년 교육과정의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에 모두 참여한 자	◦ 해당학생이 없을 경우 수여하지 않는다.
학년별 학업 우수상	◦ 해당과목의 1학기 기말, 2학기 기말고사의 원점수 합계에 의하여 최고 득점자에게 수여한다. ◦ 당해 학년 교육과정의 정기고사 및 수행평가에 모두 참여한 자	◦ 동점자 처리는 다음과 순위와 같이 한다. (아래 각항의 성적이 모두 동점일 때에는 해당 학생 모두에게 수여한다.) 1. 2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높은 학생 2.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높은 학생 3. 1학기 기말고사 성적이 높은 학생 4.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높은 학생

(별표2) 교내 봉사 활동 기준 **(Detention 3**번 누적 또는 그에 준하는 행동 시**)**

구 분	행 동 기 준
학교 내 봉사 (1~3단계)	1. 무단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과를 3회 이상 한 학생 2.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고발된 학생 3.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한 학생 4. 학교의 기물을 의도적으로 파손 또는 훼손한 학생 5. 청소년 유해 등급의 서적 및 미디어를 본 학생 6. 학교를 무단이탈 또는 무단 외박한 학생(공휴일, 자유 시간 포함) 7.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거나, 공기계를 허위로 제출하고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휴대하다가 적발된 학생 8.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별표3) 사회봉사 활동 기준 **(Detention 5**번 누적 또는 그에 준하는 행동 시**)**

구 분	행 동 기 준
사회 봉사 (4~5단계)	1. 아무 이유 없이 수업을 거부한 학생 2. 시험을 거부한 학생 3. 다른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학생 4. 상습적으로 욕설을 하거나 타인을 위협하고 싸움을 하는 학생 5.이성간에 공공연하게 신체 접촉을 하거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만남 등으로 적발된 학생 6.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7. 타인의 물건을 고의로 가져간 학생 8. 불미스런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9. 시험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이 행위에 협조한 학생 10. 타인을 모욕 및 비방하는 학생 11. 담배, 라이터, 술을 소지하다가 적발, 교외에서 흡연/음주가 교내에서 적발 된 학생 12.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별표4) 퇴학처분 기준 **(**징계 위원회 회부 후 결정**)**

구 분	행 동 기 준
퇴학 처분 (6단계)	1. 교내에서의 흡연/음주로 적발 된 학생 2. 징계지도 과정 중에 아무 이유 없이 불참하거나 반항하는 학생 3. 형사상 유죄로 판정된 학생 4. 고의로 시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5.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6. 흉기를 폭행에 사용한 학생 7. 집단폭행을 모의, 선동 가담한 학생 8.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학생 9. 불법적 동맹휴학 등의 집단행동을 선동하거나 동참한 학생 10. 이성간의 교제 정도가 지나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학생 11.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하거나 교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10. 기숙사에서 이성의 방에 무단으로 출입하거나, 함께 어울린 경우 13.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14. SNS 및 사이버 윤리 수칙을 지속적으로 위반 시

GYEONGI GLOBAL SCHOOL

405 Gyeongui-ro, Il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10407 (http://www.ggs.or.kr)
+82-31-901-5600 (Fax :+82-31-901-3010)